
제2023-5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2023. 7. 5.

심 의 안 건

심의안건 제1호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 의 연 월 일 2023. 6. 27.

안 건 발 의 자 중앙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1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187조제1항에 따라 일부개정회칙안이 발의되었을 때에 전체학생대표자 회의에서 일부개정회칙안을 심의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자구 및 체계를 정비하여 보다 명확한 규정이 될 수 있도록 함.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결기구 운영 등 총학생회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안 의결 확인: 붙임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별첨1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2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목적 및 경위: 별첨3
- 참고사항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 2023. 6. 27.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공고: 2023. 6. 27.
- 의결문안
 -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안건 발의를 의결한 회의체 명칭	중앙운영위원회
해당 회기의 명칭	제2023-14회 중앙운영위원회(6월, 정기회)
해당 회기의 일시	2023. 6. 26.
안건제목	심의안건 제3호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발의안
표결결과	총원: 21명/재적: 21명 재석: 15명/찬성: 14명/반대: 1명/기권: 0명
해당 의결사항의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심의·의결함. -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38조의2"를 각각 "제39조"로 수정함.

심의안건 제2호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발 의 연 월 일 2023. 6. 27.

안 건 발 의 자 중앙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1호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14조, 제19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부개정세칙안·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을 때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일부개정세칙안·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기 위함.

주요내용

- 자구 및 체계를 정비하여 보다 명확한 규정이 될 수 있도록 함.
- 국회법을 차용하여 의결기구운영세칙을 전반적으로 개편함.
-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함.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발의안 의결 확인: 붙임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별첨1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2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목적 및 경위: 별첨3

참고사항

-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발의: 2023. 6. 27.
-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공고: 2023. 6. 27.

의결문안

-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안건 발의를 의결한 회의체 명칭	중앙운영위원회
해당 회기의 명칭	제2023-14회 중앙운영위원회(6월, 정기회)
해당 회기의 일시	2023. 6. 26.
안건제목	심의안건 제4호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발의안
표결결과	총원: 21명/재적: 21명 재석: 11명/찬성: 11명/반대: 0명/기권: 0명
해당 의결사항의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심의·의결함. - 제21조제1항 중 “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假書) 또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대의원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청가서(請假書)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 제25조제1항 중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함.

심의안건 제3호 회의진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 의 연 월 일 2023. 6. 27.

안 건 발 의 자 중앙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1호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14조, 제19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부개정세칙안·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을 때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일부개정세칙안·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기 위함.

주요내용

- 의결기구운영세칙 전부개정세칙안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회의진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안 의결 확인: 붙임

회의진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별첨1

회의진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신·구조문대비표: 별첨2

회의진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적 및 경위: 별첨3

참고사항

- 회의진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 2023. 6. 27.
- 회의진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고: 2023. 6. 27.

의결문안

- 회의진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붙임**회의진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안 의결 확인**

안건 발의를 의결한 회의체 명칭	중앙운영위원회
해당 회기의 명칭	제2023-14회 중앙운영위원회(6월, 정기회)
해당 회기의 일시	2023. 6. 26.
안건제목	심의안건 제5호 회의진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안
표결결과	총원: 21명/재적: 21명 재석: 12명/찬성: 12명/반대: 0명/기권: 0명
해당 의결사항의 의사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심의안건 제4호 비상대책위원회 징계요구안

제 출 연 월 일 2023. 7. 2.

안 건 제 출 자 감사원 원장 김현섭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6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44조, 「재정운용세칙」 제17조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미승인 항목의 집행, 사후승인 인정 기준 초과, 감사원의 회계감사 평가 등에서 기구별 결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학생회칙」 제44조를 준용하여 결산의 책임 및 운영비 예산삭감과 사과를 요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감사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하여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운용세칙」 제17조의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함.
- 2022년 하반기 비상대책위원회는 2022년 4분기 회계감사서류 필수제출서류를 일부 미제출하여 감사원은 해당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표명함.
- 감사원이 감사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해 해당 피감기관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시행할 수 없었으므로 재정운용세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구의 책임자 및 회계담당자가 공동 명의로 필수제출서류 미제출에 대한 소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함.
- 감사원은 이미 해당 피감기구의 장이 ARA에 사과문을 게재한 것을 확인하였지만 재정운용세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피감기구의 장(대표)과 회계담당자가 함께 사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사과문 작성에 대해 감사원과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함.
- 학생회칙 제44조6항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함. 해당 피감기관에서 제출한 소명을 불임으로 첨부함.

□ 비상대책위원회 소명: 불임

□ 의결문안

- 비상대책위원회 징계요구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만청하세요, 2022년 4분기 KA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우진, 재정국장 이정윤입니다.

다음과 같이 소명만 전달드립니다.

만청하세요, KAIST 학부총학생회 2022년 4분기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우진, 재정국장 이정윤입니다.

지난 2022년도 4분기 감사결과, 해당 분기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예결산안 및 거래명세조화서 필수서류 7일 이상 미제출로 감사점수 0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어의제기 기간에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전에 있었던 소명 기간동안 제출을 하지 않아 점수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감사보고서 제출 당시와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산 이후 간격이 컸고, 사전에 제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 증빙자료를 모두 준비했으나, 그 외 제출 자료를 만드는 데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재정국의 규모도 이전 비상대책위원회에 인원이 크게 감소되어 한번에 담당할 일이 많아지면서 서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위원장과 재정국장의 불찰에 이러한 감사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명 기간동안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 2개월 전에 이미 단체가 해산을 하여 미비한 서류를 재검토하는데 시간이 부족했고, 저의 불찰로 인해 좋지 않은 감사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점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감사원의 결과에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런 결과를 만들어 학우 여러분들께 사죄드립니다.

본 감사결과는 현재 학생사회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와 전혀 관계 없음을 확인드립니다.

다만, 미제출된 자료는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거래명세조화서'이며, 회계의 투명성과 직결된 영수증과 이체증명서를 비롯한 감사증빙자료를 전부 제출 완료했으며, 이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예결산안을 모두 심의 완료된 바를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준비했던 모든 자료는 회계결과 발표 직후에 업로드 했던 것과 같으며, 같은 내용의 파일을 다시 한 번 업로드 해드립니다.

2021년 부터 회계를 계속 담당해오며 좋은 감사점수를 받아왔음에도, 끝내 이러한 결과를 받아 모범이 되지 못했음에 실망하셨을 학우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 4분기 비상대책위원장 정우진, 재정국장 이정윤

심의안건 제5호 VOK 징계요구안

제 출 연 월 일 2023. 7. 2.

안 건 제 출 자 감사원 원장 김현섭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6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44조, 「재정운용세칙」 제17조에 따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미승인 항목의 집행, 사후승인 인정 기준 초과, 감사원의 회계감사 평가 등에서 기구별 결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학생회칙」 제44조를 준용하여 결산의 책임 및 운영비 예산삭감과 사과를 요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감사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하여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운용세칙」 제17조의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함.
- VOK는 2022 하반기 회계감사자료 필수제출서류를 일부 미제출하여 감사원은 해당 피감기관에 대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표명함.
- 이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시행할 수 없었으므로 재정운용세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구의 책임자 및 회계담당자가 공동 명의로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에 대한 소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함.
- 학생회칙 제44조6항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함. 해당 피감기관에서 제출한 소명을 불임으로 첨부함.

□ VOK 소명: 불임

□ 의결문안

- VOK 징계요구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한다.

KAIST 감사원 귀중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방송국 VOK 대표자(국장) 김선호, 회계담당자(총무) 권형준입니다.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자 하심에 따라, 학생회칙 제 44 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6월 27일 오후 10시 39분에 저희 VOK에게 소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수제출서류를 자료 제출 기한이 지난 7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소명하고자 합니다.

필수제출서류를 자료 제출 기한(2023. 2. 28.)이 7일 넘게 지난 2023년 3월 12일 오전 4시 9분에서야 다 제출하게 된 것에는 다음과 같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VOK에서 회계감사를 전적으로 신경써야 하는 임원직은 회계담당자인 총무였고, 국장은 본 기구(VOK)의 대표자 및 기구장으로서는 기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신경써야 합니다. VOK 자치규칙에 의하여 2023년 현역 총무와 국장은 2022년 11월에 임명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총무 인수인계 과정 중 학생사회 구조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회칙 제 45 조, 제 59 조의 2, 제 168 조 등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목적으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께 제출해야 하는 2022년 하반기 결산과, 감사시행세칙 제 17 조, 제 18 조제 1 항, 제 22 조 등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하는 2022년 4분기 예결산안/통장거래내역, 2023년 1분기 예결산안&통장거래내역이 서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께서 제시하신 제출 기한(2023. 2. 26.)과 감사원에서 제시하신 제출 기한(2023. 2. 28.)이 거의 비슷했던 것도 착오를 일으켰던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타임라인으로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2/26 중앙운영위원회에 VOK 2022년도 하반기 결산(통장거래내역 포함)을 제출
 2. 2/28 감사원에 지출내역증빙자료 13건 제출
 3. 3/2 감사원에 기 제출한 자료 중 자치회계를 제외한 지출내역증빙자료 5건(재제출), 거래명세조화서, 공금카드번호 제출
 4. 3/9 질의서 수신
 5. 3/12 감사원에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서, 회계감사자료(예결산안&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조화서(재제출), 공금카드번호(재제출), 제출서류 Check List 제출
- * 제출서류 Check List는 '2022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매뉴얼-1, 필수제출서류-VI, 제출서류 Check List'의 내용이 완전하지 않았고 해당 서류를 미 첨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감정을(J 항목, 3 점) 고려하여, 매뉴얼의 수정을 기다리다가 질의서 수신

이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즉,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산(통장거래내역 포함)과 별개로 감사원에 회계감사자료(예결산안&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운영위원회에 예결산안&통장거래내역을 이미 제출하였기 때문에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착오는 질의서를 수신한 이후 답변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도 계속 이어졌고, 감사보고서가 나오고 한참 지나서야 뒤늦게 두 자료를 별개의 기구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서에 따라 회계감사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은 필수제출서류와 별도로 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서 요청하신 것으로 생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이 이 소명만큼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누락된 자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질의'라고만 받아들인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 인수인계 과정 중에도 문제는 발생하였습니다. 당연히게도 2022 하반기 회계감사는 VOK에서 일어나는 업무 중 하나였기 때문에 국장이 관리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수인계 과정 중 회계감사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할 정도로 관련하여 인수한 바가 없으며, 국장 인수인계서에는 연간 일정에 회계감사가 없고, 회계 관련된 일은 총무가 전적으로 담당하여 국장이 신경쓸 것이 많이 없다고 인수합니다. VOK의 업무 중에는 인수인계가 우수한 수준으로 이루어져(ex. 행사 총기획) 세세한 것까지 검토할 필요가 없는 업무들이 있었고, 회계감사 역시 같은 맥락에 있는 업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정 기구의 기구장이 그 구성원들보다는 학생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이니, 회계감사 과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인수-인계받은 내용이 있었다면 국장이 총무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착오로부터 비롯된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이 점에 있어서 국장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학생사회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회계감사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착오로 인하여 자료 제출 기한을 넘겨 회계감사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수인계에서 정보의 흐름은 인계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수하는 사람에게 흐르다 보니, 이런 점에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인수인계의 오류가 있었어도 2022 하반기 회계감사 매뉴얼 등을 보다 더 여러 차례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보면서 그 뉘앙스를 이해하였다면 지금의 치명적인 착오로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리라 것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또 저희가 산하 기구와 피감기관의 대표자와 회계담당자로서 자료 제출처를 구분하기 위해 더욱 주체적으로 노력하고 알아보았어야 했다는 점 역시 인정합니다. 이 두 가지 점을 포함하여 여러 복합적인 불찰과 오해들로 인해 발생한 불편과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성과 청렴성을 해친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소통이 필요했다 보니 늦은 시간에 이제야 소명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의 착오로 인하여 회계감사 과정에 차질을
맞고 학생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해치게 되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 상반기 회계감사에서는 회계감사에 더욱 성실히 임하여
필수제출서류를 원칙에 맞게 제출하고, 회계감사 매뉴얼을 꼼꼼히 검토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방송국 VOK

인 준 안 건

인준안건 제1호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인준안

제 출 연 월 일 2023. 6. 28.

안 건 제 출 자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한정현

안건 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6호

- 제안이유
 - 「학생회칙」 제1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결과를 보고한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문화자치위원회에서 박병찬(21, 전산학부) 학우를 위원장으로 내부호선하여 인준을 요청함.
-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인준안

이름	소속학과	학번	비고
박병찬	전산학부	20210227	-
- 참고사항
 - 문화자치위원회 내부호선: 2023. 4. 23.
 - 중앙운영위원회 내부호선 보고: 2023. 6. 26.
- 의결문안
 -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인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붙임1**내부호선 결과 확인**

내부호선한 회의체 명칭	회의
해당 회기의 명칭	제2023-5회 회의
해당 회기의 일시	2023. 4. 23.
안건제목	인준안건 제1호 문화자치위원장 인준안
표결결과	총원: 9명/재적: 5명 재석: 5명/찬성: 5명/반대: 0명/기권: 0명
의사	오윤석(19, 수리과학과) 학우가 문화자치위원장을 그만둠에 따라 박병찬(21, 전산학부) 학우가 문화자치위원장에 지원, 이에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내부 호선함.

붙임2**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확인**

해당 회기의 명칭	제2023-14회 중앙운영위원회(6월, 정기회)
해당 회기의 일시	2023. 6. 26.
안건제목	보고안건 제4호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 (이의유무 표결)
의사	보고안건 제4호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함.

2023. 7. 5.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한정현